

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(공시송달)

보험업법 제86조,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(보험설계사,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)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4일
금융위원회위원장

1. 공시송달 대상자

성명	주민번호/사업자번호	주소
이남선	731215-*****	경기도 안산시
이판금	570909-*****	경기도 고양시
정성원	770915-*****	전라남도 목포시
백서영	871123-*****	경기도 평택시
박영순	620608-*****	광주광역시 북구
안혜진	830418-*****	경상남도 고성군
육정혁	800309-*****	강원도 강릉시
최옥자	550319-*****	충청남도 당진시
최승용	801028-*****	서울특별시 강남구
서서분	530515-*****	부산광역시 해운대구
김재수	570216-*****	광주광역시 동구

우미진	650305-*****	울산광역시 북구
장미진	861208-*****	경상남도 창원시
강숙이	670321-*****	광주광역시 북구
나준호	841011-*****	경기도 수원시
서은혜	791103-*****	전라남도 나주시
오승창	821207-*****	광주광역시 북구
김정순	550113-*****	경기도 고양시
박서희	640209-*****	경기도 부천시
김기원	920312-*****	경기도 안양시
이현정	581009-*****	전라북도 정읍시

2. 서류의 명칭 :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

3. 서류의 내용 :

(1)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.

처분 대상	처분 원인	근거 법규	처분 내용 (과태료 별도)
이남선	<p>ⓈⓈ한방병원(경기도 안산시 소재) 도수치료실을 운영하면서 김OO(ⓈⓈ한방병원 개설자인 한의사), 김OO(공동운영자)과 공모하여, 요양급여 중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는 신경외과, 재활의학과, 정형외과 전문의가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함에도 환자들에게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는 피부관리사, 마사지사들 통해 마사지를 실시한 후 마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해주고 2015.2.12.~2015.11.24.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□□□□보험(주)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▲▲, ▲▲▲ 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</p>	<p>보험업법 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 제102조의3</p>	<p>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3.8.21.~</p>

처분 대상	처분 원인	근거 법규	처분 내용 (과태료 별도)
이판금	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정도의 상해임에도, 2014.9.1.~2015.7.11. 기간 중 ‘슬관절 무릎 관절증’ 등의 사유로 ㉠㉠㉠㉠병원(경기도 부천시 소재)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5.5.19.~2016.4.8.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(주)□□□□보험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▲▲▲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 제102조의3	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3.8.21.~
정성원	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정도의 질병임에도, 2014.6.24.~2016.6.29. 기간 중 ‘요추의 염좌 및 긴장’ 등의 사유로 ㉠㉠㉠㉠병원(전라남도 목포시 소재)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4.7.15.~2016.7.13.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□□□□□□□□보험(주)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▲▲▲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 제102조의3	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3.8.21.~
백서영	2019.4.30.~2019.7.9. 기간 중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, 노○○ 등과 공모하여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.4.30.~2019.8.21.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□□□□□□해상보험(주)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▲▲▲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 제102조의3	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3.8.21.~
박영순	‘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, 무릎염좌’의 사유로 4일만 통원 치료를 받고 그 외 기간에는 주거지 등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, 2020.1.29.~2020.2.12. 기간 중 ㉠㉠한방병원(광주광역시 북구 소재)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·퇴원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.2.13.~2020.2.17.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□□□□□□보험(주)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▲▲▲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 제102조의3	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2023.8.21.~ 2024.2.16.

처분 대상	처분 원인	근거 법규	처분 내용 (과태료 별도)
안혜진	2019.3.29. 실제로 화상진료(진단)를 받지 않았음에도, 권○○(○○○○의원 간호조무사) 등과 공모하여 ○○○○의원(경상남도 거제시 소재)에서 화상진료(진단)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.3.29.~2019.4.1.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□□□□□□보험(주)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▲▲▲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 제102조의3	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2023.8.21.~ 2024.2.16.
육정혁	2018.12.16. 김○○에게 폭행으로 ‘골절 및 비골 골절상’ 을 가한 후 본인이 가입한 ‘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’ 이 폭행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, 김○○와 공모하여 사고 발생 경위를 본인이 넘어지며 김○○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2018.12.19. 보험금을 청구하여 (주)□□□□보험으로부터 보험금 ▲▲▲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 제102조의3	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 2023.8.21.~ 2023.11.18.
최옥자	2015.2.26.~ 2015.4.29. 기간 중 ○○○○○○의원(광명시 하안로 소재)에서 미용 개선 목적으로 영양제(일명 ‘각테일 주사’)를 맞았음에도, 담당 의사로부터 ‘기타합병성면역결핍증, 폐경기및여성의갱년기상태’ 로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면역력 강화제를 처방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5.5.7. 보험금을 청구하여 (주)□□□□보험으로부터 보험금 ▲▲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 제102조의3	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 2023.8.21.~ 2023.11.18.
최승용	2014.9.4.~ 2016.2.28. 기간 중 유○○ 등 9명과 공모하여 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4.9.19.~ 2016.2.28.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□□□□□□보험(주)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▲▲,▲▲▲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 제102조의3	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3.8.21.~

처분 대상	처분 원인	근거 법규	처분 내용 (과태료 별도)
서서분	2018.4.9.~ 2019.9.14. 기간 중 자신이 모집한 박○○ 등 15명과 공모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8.4.12. ~ 2019.10.2.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(주)□□□□보험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▲,▲▲▲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 제102조의3	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3.8.21.~
김재수	2014.7.7.~ 2015.4.20.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㉠㉠㉠㉠㉠병원(광주 소재) 등에서 ‘요추 염좌’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.7.21. ~ 2015.4.21. 기간 중 17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□□□□□□보험(주)로부터 보험금 ▲,▲▲▲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 제102조의3	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3.8.21.~
우미진	2014.5.8.~ 2016.8.25.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㉠㉠㉠병원(서울 성북구 소재)에서 ‘요추의 염좌’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.7.15. ~ 2016.9.6.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□□□□보험(주)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▲▲▲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 제102조의3	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3.8.21.~
장미진	2019.1.22.~ 2019.5.27. 기간 중 ㉠㉠㉠㉠㉠병원의 진료비 영수증, 입퇴원확인서 등을 위조한 후, 본인 및 가족들이 마치 정상적인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기간 중 3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□□□□□□□□보험(주)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▲,▲▲▲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 제102조의3	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3.8.21.~

처분 대상	처분 원인	근거 법규	처분 내용 (과태료 별도)
강숙이	2014.11.18.~ 2014.12.3. 기간 중 김○○과 공모하여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㉠㉠㉠㉠의원(광주 소재)에서 ‘요추의 염좌 및 긴장’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.12.8. ~ 2014.12.9.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□□□□보험(주)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▲▲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 제102조의3	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2023.8.21.~ 2024.2.16.
나준호	2017.3.27. 및 2017.8.21. 전○○ 등 4명과 공모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7.3.28. ~ 2017.8.25.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□□□□보험(주) 로부터 보험금 ▲▲▲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 제102조의3	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2023.8.21.~ 2024.2.16.
서은혜	2017.2.3.~ 2017.2.16.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㉠㉠㉠㉠병원(광주 소재)에서 ‘요추의 염좌’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.2.2. ~ 2017.2.28.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□□□□보험(주)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▲▲▲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 제102조의3	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2023.8.21.~ 2024.2.16.
오승창	2016.5.30.~ 2016.6.11. 기간 중 ㉠㉠㉠㉠병원(광주 소재) 병원장 이○○ 등 2명과 공모하여 실제로 며칠만 입원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통원 치료만 받았음에도 위 병원에서 ‘요추의 염좌 및 긴장’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.6.22. ~ 2016.6.24.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□□□□보험(주)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▲▲▲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 제102조의3	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2023.8.21.~ 2024.2.16.

(2)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,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4.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(02-2100-2965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